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편저자 : 송 광 호

※ 정오 및 오타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편]

	변경 전	변경 후
p.18 문제 66번 ③번 문항	③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③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p.27 문제 37번 ③번 문항	③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③ 청원경찰의 거짓 보고 등 금지
p.31 문제 62번 박스내용	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p.40 문제 25번 ②번 문항	②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p.42 문제 38번 ③번 문항	③ 집단 행위의 금지	③ 직장이탈 금지의무
p.54 문제 24번 ①번 문항	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59 문제 57번 ④번 문항	④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④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p.83 문제 30번 ④번 문항	④ 청원경찰이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청원경찰이 법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83 문제 36번 ①번 문항	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
p.96 문제 31번 ③번 문항	③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정답 및 해설]

	변경 전	변경 후
p.111 문제 11번 조문	③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③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p.116 문제 26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p.117 문제 26번 조문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117 문제 27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p.118 문제 31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경비업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조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136 문제 66번 해설, 조문 교체	해설 ② (틀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간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설 ② (틀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간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일부개정]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전문개정 2007.1.18.]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 18.]
p.144 문제 4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의2(허가의 제한)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p.154,155 문제 31,32번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156 문제 37번 해설	① (틀림)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① (틀림)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p.156 문제 37번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169 문제 62번 해설	ㄱ. (틀림)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ㄱ. (틀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p.169 문제 62번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 타법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3.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일부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3.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p.181 문제 4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183 문제 6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191 문제 25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192 문제 29번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192 문제 31번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195 문제 38번 해설, 조문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4항).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4항).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206 문제 57번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 타법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3.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일부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3.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 원장이 지명하는 1명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p.224 문제 19번, 21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231 문제 35번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p.241 문제 57번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 타법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3.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일부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3.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 원장이 지명하는 1명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p.257 문제 14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p.261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문제 25,28번 조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288 문제 11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p.290 문제 16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296 문제 30번 해설, 조문	해설 ④ (옳음) 청원경찰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1조).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청원경찰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해설 ④ (옳음)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1조). 조문 『청원경찰법』[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추가)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9. 18.]

7일만에 끝내는 경비지도사 2차 최종모의고사

(경비업법+경호학)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p.318 문제 5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p.321 문제 11번 조문	『경비업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경비업법』[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p.340 문제 56번 조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 타법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13.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일부개정]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3.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